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 전형지침

1. 목 적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신규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025년 3월 1일자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에 적용한다.

3. 자 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 제5조(자격)

4. 임용시기

2025년 3월 1일

5.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가. 제출서류의 적격성 분류 : 인사처장은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의 자격과 제출서류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하자가 있는 자는 교원 신규채용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나. 전형절차

-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산업체 경력과 채용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산학협력중점교원 자격 등의 심사
- 2) 전공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발전가능성 등의 심사
- 3) 공개발표심사: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능력, 학생지도, 산학연 협력성 등의 심사
- 4)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에 대한 창학이념 구현 가능성 및 인성 등의 심사

다. 전형방법

- 1)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하되, 채용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공개발표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본교 공개발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다만, 공개발표심사에서 예체능계열의 실기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원 중에서 본교 교원 1인과 본교 소속이 아닌 교원 1인을 선발하여 공개발표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3) 본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공개발표심사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채용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되, 채용후보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합산점수가 50% 미만인 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선발한다.
- 5) 면접심사에서는 최종 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 6)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일에 귀국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처장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귀국 시까지 면접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 7)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8)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9) 8)항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6. 심사위원

- 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 채용대상 채용분야와 관련이 있는 6인 이내의 교원을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본교 교원이 심사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 산업체 경력과 채용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발전가능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이 아닌 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분야 전공자를 인사처장의 2배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나. 공개발표심사 : 공개발표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본교 교원으로 한다.
- 다. 면접심사 : 면접위원은 총장, 부총장, 인사처장, 해당 대학(원)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한다.
- 라.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1)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된다.
 - 가)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나) 지원자의 석박사 논문의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 다)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3) 지원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7. 신규임용 기본지침

- 가. 국내·외 우수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
- 나. 영어강의능력 및 국제화 능력을 중시한다.
- 다. 본교의 창학이념구현 가능성을 적극 고려한다
- 라. 박사후 과정 및 실무경력자를 우대한다.

8.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및 배점

가. 심사기준 : <별표1호>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 참조

나. 영역별 심사기준 및 배점

1) 지원자의 산업체경력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심사위원 2/3이상이 불일치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산업체 경력이 지원서 접수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 경력자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2)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

- 지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2022.01.17.~2025.01.16)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한다. 다만, 지원자수가 적어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등급을 결정한다.
-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총 경력년수로 한다.
- 이중경력인 경우 환산율이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명예박사학위는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대학, 대학원 성적

- 백분율 환산점수를 적용
- 대학성적(10점)+대학원성적(10점)=20점(단, 대학원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성적×2로 한다)
- 배점표

100~95	94~90	89~85	84~80	79~75	74점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성적이 없거나, 백분율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적환산표를 기준으로 채점위원 재량으로 판단한다

4) 연구실적의 양적평가

연구실적 환산율에 따라 산출한 연구실적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한다. 다만, 지원자수가 적어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등급을 결정한다.

구 분	세부 평가항목		인정률 (%)	비 고
논 문	1	국제전문학술지	500	A&HCI, SSCI, SCIE(SCI)
	2	국제일반학술지	200	SCOPUS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서 인정되는 정규논문
	3	국내전문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특 허	4	국외 특허	200	출원 제외
	5	국내 특허	100	출원 제외
공연 전시 발표회	6	국 외 개인 /전시	150	선진 8개국(G8)의 공인된 공연/전시 전문기관에서 개최된 공연전시 발표회
			100	선진 8개국(G8)이외 국가의 공인된 공연/전시 전문기관에서 개최된 공연전시 발표회
	7	국 내 개인 /전시	100	서울시 및 광역시의 공인된 공연/전시 전문기관에서 개최된 공연전시 발표회
			70	서울시 및 광역시 이외의 공인된 공연/전시 전문기관에서 개최된 공연전시 발표회

※ 단독(100%), 2인공동(70%), 3인공동(50%), 4인이상(30%)

※ 연구실적 인정 기준

- ① 인쇄출판물과 Web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서 Web에 공개된 논문은 권(Volume)과 게재면(Page), 게재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함
 - 인쇄출판물과 Web 게재일자가 다를 경우 인쇄출판물 게재일자를 적용
- ② Web으로만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서 Web에 공개된 논문은 권(Volume)과 게재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함
- ③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5) 연구실적의 질적평가

<표 1>의 연구실적 환산율에서 논문실적(예능계열의 경우 공연전시발표실적)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구실적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한다. 다만, 지원자수가 적어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예능계열은 공연·전시·발표회 실적을 포함한다.

6) 산학협력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지원자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

다.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

- 가) 공개발표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나) 공개발표자는 지원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강의주제를 선택하여 10분 이내에 발표한다.
- 다) 공개발표자는 발표원고를 5부 지참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라. 면접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9. 임용예정자의 직급결정

- 가. 임용예정자의 직급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나. 타대학 경력자의 경우
 - 1) 4년제 대학 재직경력
 - 부교수 이상 → ‘부교수’로 직급을 부여한다.
 - 조교수 → ‘조교수’로 직급을 부여한다.
 - 2)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학력인정 학교(산업대학 포함) 재직경력
 - 교 수 → ‘부교수’로 직급을 부여한다.
 - 부교수 → ‘조교수’로 직급을 부여한다.
 - 조교수 → ‘조교수’로 직급을 부여한다.

다. 상기 이외에는 본교 전임교원 직급산정 기준표에 의해 직급을 부여한다.

1) 경력환산표

번호	경 력 종 류	환산율	비고
1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경력(국방대학원, 부교수 이상의 사관학교 교관 포함)	100%	
2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전임교원 경력	70%	
3	대학의 비전임교원 경력	30%	
4	대학의 강사 경력	30%	주당 9시간 이상
		15%	주당 9시간 미만
5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법인체)에서의 전임 연구원 경력	60%	
6	Post-Doc 경력	60%	
7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서의 전임 종사 경력	50%	
8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개업년수	50%	10년한
9	판.검사 재직년수	50%	10년한
10	기술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력	30%	10년한
11	민간산업체에서 대학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의 전임 종사 경력	30%	10년한
12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경력	30%	10년한

- ※ ① 위 경력환산표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국내외 학·연·산·관등의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에 대하여 경력환산표의 해당 경력종류의 환산율을 1.5배까지 부여할 수 있다.
- ② 경력환산표의 경력 종류 등 기타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위 경력환산표 이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2) 직급산정기준

직 급	총 경력년수	비 고
부 교 수	7년 이상	
조 교 수	7년 미만	

다. 기타사항

- 1) 경력기산일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으로 한다.
- 2) 동일기간 중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만 산입한다.
- 3) 직급획정은 최초 서류 접수시 제출된 경력만으로 산정한다.

10. 기 타

- 가. 총장은 심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요구하거나 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은 심사 및 면접 전까지 총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총장은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1. 전형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교원 총원분야. 인원 수요조사	2024년 12월 13일(금) ~ 12월 18일(수)	
2	교원 총원분야.인원 확정(총장)	2025년 01월 06일(월)까지	예정
3	교원초빙 공고 (본교 홈페이지, 하이브레인넷 등)	2025년 01월 07일(화) ~ 2025년 01월 21일(화)	공고기간 :15일 이상
4	지원서 작성가능(인터넷)	2025년 01월 13일(월) ~ 01월 21일(화)	
	지원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2025년 01월 16일(목) ~ 01월 21일(화)	5일
5	서류정리.기초심사조서 작성 및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2025년 01월 22일(수)까지	예정
6	기초 및 전공심사	2025년 02월 04(화) ~ 02월 05(수)	예정
7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통보	2025년 02월 07일(금)까지	예정
8	공개발표심사	2025년 02월 12일(수) ~ 02월 13(목) 중	예정
9	공개발표심사 결과 통보	2025년 02월 17일(월)까지	예정
10	면접심사	2025년 02월 19일(수) ~ 02월 20일(목) 중	예정
11	면접심사결과 통보	2025년 02월 24일(월)까지	예정
12	임용확정자 서류 접수	2025년 02월 27일(목)까지	예정
13	임용확정자 학력.경력.신원조회	2025년 2월 말	예정
14	임용확정자 임용동의 및 직급 부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2025년 2월 말	예정
15	임용계약 체결	2025년 2월 말	예정
16	법인 및 교육부 임용 보고	2025년 2월 말	예정
17	학부 및 전공교원과 상견례	2025년 2월 말	예정
18	신임교원 O/T	2025년 3월 초	예정
19	교원 신규임용	2025년 3월 1일	
20	임용장 수여	2025년 3월 초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산학협력중점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

전형 절차	심사 구분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점 수					비 고
기초 및 전공 심사	기 초 심 사 (30점)	1.지원자의 산업체경력 과 채용분야와의 일치 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충족 여부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과 채용분야 일치도	일치		불일치			불일치로 심사평 정된 경우에는 이 후 심사를 생략함
		2.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10점 ~ 2점)	상대평가	A	B	C	D	E	
		3.대학.대학원성적 (20점 ~ 0점)	대학성적(10점)+대학원성적(10점)=20점 100 ~ 95 94 ~ 90 89 ~ 85 84 ~ 80 79 ~ 75 74점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대학원성적 =(석사+박사)/2
	전 공 심 사 (70점)	4.연구실적의 양적 평가 (10점 ~ 2점)	상대평가	A	B	C	D	E	
		5.연구실적의 질적 평가 (10점 ~ 2점)	상대평가	10	8	6	4	2	
		6.산학협력발전가능성 (50점 ~ 10점)	상대평가	A	B	C	D	E	
	합 계	100점		10	8	6	4	2	
				50	40	30	20	10	
	공개 발표 심사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	A.교수로서의 가치관 및 본교 지원동기 B.학생지도 및 교육역량 C.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국제화 역량 D.산학연 협력성과 발전가능성 E.창학이념 적합성 및 구현가능성	점 수					비 고
				A	B	C	D	E	
				10	8	6	4	2	
				15	12	9	6	3	
				10	8	6	4	2	
				30	25	20	15	10	
				10	8	6	4	2	
	합 계	75점							
면접 심사	면 접 심 사	최종면접	A: 인격과 품위 B: 공헌 및 발전가능성 C: 창학이념 구현 가능성	可		否			